

瑞山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8. 3. 31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8. 3. 31
- 라. 上程日字 : 1998. 4. 9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畜産課長 朴榮進)

◎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초지법중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농업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 시키고자 '98.4.10일부터 폐지되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서산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되었던 서산시초지조성심의 위원회조례는 '97.4.10일 개정 공포되어 " 98.4.10일 시행 되는 초지법 제4조가 폐지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 ◎ 초지법을 개정하면서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농업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 ◎ 본 조례안을 폐지 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현행 제도나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있었음

5. 討 論 : 있었음

6. 少數意見 : 있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190호
의결년월일	1998. . . (제 회)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 1. 11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90
----------	-----

제출년월일 : 1998. 2. 3/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초지법중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자 금년 4월 10일 부터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폐지(헌행 제4조)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4월 10일 부터 시행한다.